

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제문화행사의 요건) ①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·단체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
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행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.

1.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해당 행사 참가자의 30퍼센트 이상인 행사

2. 외국인 참가자가 1,000명 이상인 행사로서 10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

제3조(국제문화행사의 지원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국제문화행사 지원 신청서에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

야 한다.

1.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목적 및 개요

2.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 및 재원(財源) 조달 계획

3.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 명세

4.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그 필요성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.

제4조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 ①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(이하 “조직위원회”라 한다)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5조(수익사업) ①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입장권 판매사업

2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

③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·법인·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.

1.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을 개수·보수하는 경우

2.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
제6조(국제문화행사 지원단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 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에는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

제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 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 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 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,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	법 제19조 제 1항 제1호	200	300	500
나.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해당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 또 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9조 제 1항 제2호			
1) 해당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 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 우		200	300	500
2) 해당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 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	100	200	300